

원본대조필



제 충북10-20250704-0007-0 호

발급번호 : 0507-4744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『축산물법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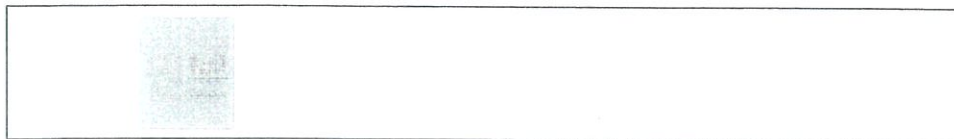
2025년 07월 07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진정인



신청인	성 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129-81-30202	
	업 소 명	(주)팜스코		업태유형	기타	
	주 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		
도축장	업 체 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	2025년 07월 04일	
	소 재 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		043-535-3412	
(단위 : 두)						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030800800(97)		1+	110030800800(116)	1+	110030800800(134)	1
110030800800(98)		1	110030800800(117)	1+	110030800800(135)	1
110030800800(99)		1	110030800800(119)	1+	110030800800(136)	1+
110030800800(100)		1+	110030800800(120)	1+	110030800800(138)	1
110030800800(101)		1+	110030800800(122)	1	110030800800(139)	1+
110030800800(102)		1+	110030800800(123)	1	110030800800(141)	1+
110030800800(104)		1	110030800800(124)	1	110030800800(142)	1+
110030800800(105)		1	110030800800(125)	1	110030800800(143)	1
110030800800(106)		1	110030800800(126)	1+	110030800800(144)	1
110030800800(107)		1+	110030800800(127)	1+	110030800800(145)	1+
110030800800(108)		1+	110030800800(128)	1+	110030800800(146)	1+
110030800800(109)		1	110030800800(129)	1+	110030800800(147)	1+
110030800800(111)		1	110030800800(130)	1+	110030800800(148)	1
110030800800(112)		1+	110030800800(132)	1+	110030800800(149)	1+
110030800800(115)		1+	110030800800(133)	1+	110030800800(150)	1+
전체 :		45두 (1+ 등급 : 28	1 등급 : 17	2 등급 : 0	동외등급 : 0	)

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5-07-07 14:30:51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품내역은 『축산물법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

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축의종류 : 돼지

2.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: 30 (110030800800)

3. 중량 : 자육 2603 kg, 내장 등 기타 420 kg

4. 작업장명 : (주)팜스코

5. 검인번호 : 충북10

6. 도축일 : 2025년 07월 04일

7. 도축회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

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: []여, [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 수출 국가명 :

-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18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07월 04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 : 이정수 (서명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2657)

